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11. 23 선고 2021가단33561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11. 8 선고 2021나33623 판결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11. 23 선고 2021가단33561 판결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 담당변호사 성수인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3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11. 2.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4248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. 10. 21. ‘C은 원고에게 3억 4,9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,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그 후 원고가 위 확정채권 중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로 C 소유의 강릉시 E 토지·건물 및 강릉시 F 임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20. 1. 22.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, 그 결과 위 경매목적물이 대금 3억 2,912만 원에 매각되어 2020. 10. 8.경 그 매각대금 완납이 이뤄진 데 이어, 2020. 10. 21.경에는 배당기일 지정통지까지 마쳐졌다.

다. 그에 따라 배당기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,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, 원고의 청구채권 1억 원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 전액을 제외하고도 1억 원 남짓이 C 몫의 잉여금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, C은 2020. 11. 2. 누나인 피고에게 자신의 대한민국에 대한 잉여금수령채권 중 1억 원 상당의 별지 기재 채권(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양도한 뒤 2020. 11.

3. 경매법원에 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고(이하 위 채권양도를 ‘이 사건 채권양도계약’이라 한다),

피고는 그 채권양수인으로서 2020. 11. 5. 경매법원에 배당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1).

라.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직후인 2020. 11. 5. 위 확정채권 중 나머지 일부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타채24845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잉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.

마. 한편,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위 경매목적물은 모두 경매절차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, C에게는 위 1억 원 남짓의 잉여금수령채권과 가액 1억 1,000만

원 가량의 강릉시 G건물 H호(I은행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)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바. 그 후 위 경매법원은 2020. 11. 19. 배당기일에, 2순위로 원고(신청채권자)에게 1억 원, 3순위로 피고(채권양수인)에게 잉여금 중 1억 원, 4순위로 원고(추심권자)에게 나머지 잉여금 19,592,1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, 피고는 그 무렵 위 배당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현저한 사실, 갑 제1, 2, 3호증, 을 제1, 2, 3, 5, 6호증의 각 기재(각 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강릉세무서, 강릉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책임재산 부족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,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하고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(양수금) 수령액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의 부 J의 사망 당시 피고와 C, K 등 상속인들 사이에 ‘위 경매목적물 등 상속재산 전부를 C의 단독소유로 하는 대신, C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’라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고, 이후 피고는 위 1억 원을 C의 단독소유로 된 위 경매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 채 계속 그곳에서 거주해 오다가, 위 경매절차에 이르러 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,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을 제1,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 내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완수

채권의 표시

- 채권자:
- 채무자: 대한민국(소관: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)
- 금액: 100,000,000원
- 채권의 내용: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잉여금(배당금) 채권.

끝.

1) 피고는 현황조사 직후인 2020. 4. 10.에도 ‘확정일자 없는 임대차계약서’를 첨부한 채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.